The Hope Report 10호 [2013.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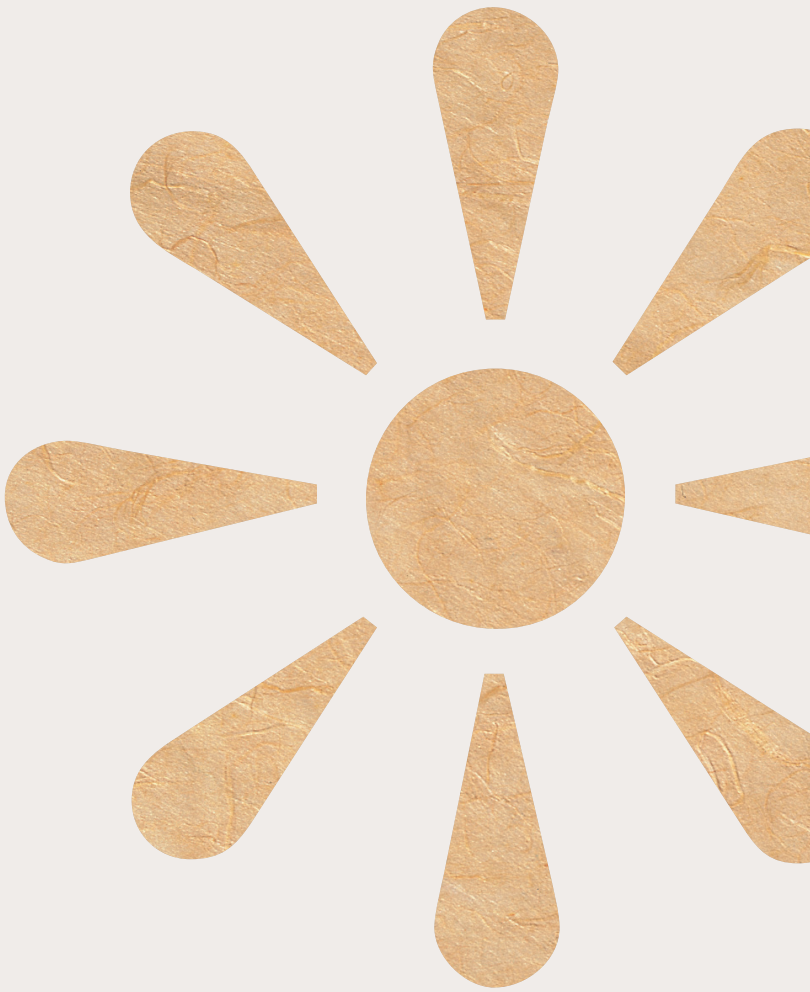
지방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현황과 과제

목차

1. 지속가능발전 개념의 태동
2. 국가와 지방의 지속가능발전 현황
3.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과 지방지속가능발전
4. 지방의 지속가능발전 실태와 제약요인
5. 지방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추진전략
6. 지방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핵심과제
7. 지방의 지속가능발전 추진을 통한 기대효과
8. 마치며

작성 | 기획홍보실

권기태 실장 | kwonkt@makehope.org



희망제작소
The Hope Institute

개요

박근혜정부가 출범한 이후 국회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지속가능발전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처리방향도 함께 회자되고 있다. 지난해 이명박정부에서 추진한 4대강 사업과 원자력 확충은 한국의 지속가능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방연구원 보고서도 많은 반향을 일으켰다. 다시 경제성장 중심의 정책에서 경제, 사회, 환경정책의 조화를 이루고 미래세대를 배려하는 지속가능발전 정책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국가의 지속가능성은 지방의 지속가능성이 모여서 완성되는 총합적 성격을 띠기 때문에 지방을 중심에 두고 사고하고 실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희망리포트에서는 인류 공동의 목표인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지방의 현황을 짚어보고, 지방에서 어떠한 전략과 과제를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1. 지속가능발전 개념의 태동

18세기 산업혁명 이후 지속되어온 대량생산, 대량소비 방식에 대한 문제의식은 1950년대 대형 환경사고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대기오염으로 1주일간 12,000명이 사망한 1952년 런던스모그 사건, 2년 뒤인 1954년에 자동차배기가스로 인해 발생한 LA 스모그사건, 1956년 일본에서 발생했던 수은중독으로 인한 미나마따병 등은 산업화를 통한 경제발전으로 풍요를 누리는 대가로 인류가 치러야 할 비용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들이었다. 런던 스모그, 이따이이따이, 미나마따 등은 산업활동이 인간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을 기울이는 계기가 되었다.

1960년대에는 50년대의 경험위에 환경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다양한 저술들이 발표되었다. 널리 쓰이던 살충제 DDT가 먹이사슬을 통해 축적되어 치명적인 피해를 가할 수 있다는 레이첼 카슨의 〈침묵의 봄〉, 현재의 성장추세가 감소되지 않는 한 환경적 재앙과 생태계 붕괴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로마클럽의 〈성장의 한계〉, 양적인 팽창과 성장을 추구하는 과학기술문명을 지양하고 중간기술과 생태계에 부담을 주지 않는 질적 경제를 추구해야한다는 에른스트 프리드리히 슈마허의 〈작은 것이 아름답다〉등은 환경이 고려되지 않은 경제발전의 위험성을 엄중히 경고하는 저작물들이었다. 이 책들은 세계적으로 환경운동의 붐을 일으키면서, 환경행정의 기틀이 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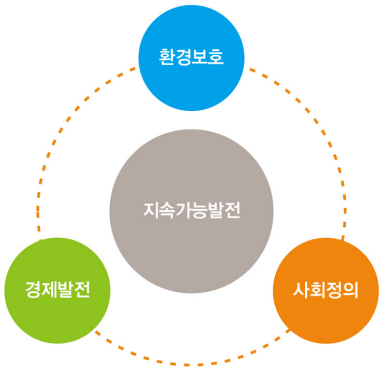
UN은 지구 생태계에 대한 우려로부터 제기되는 환경보전 필요성과 기본적 필요의 충족이라는 경제

적 측면을 동시에 충족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다. 1972년에 시작된 UN의 연구는, 1987년 노르웨이 전 수상 브룬트란트가 3년간에 걸쳐 세계 각지에서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해서 펴낸 〈우리 공동의 미래〉에서 마침내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개념을 인류가 지향해야 할 방향으로 선언한다.

지속가능발전 개념

지속가능발전이란 미래세대가 그들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기반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세대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발전

Sustainable development is development that meets the needs of the present without compromising the ability of future generations to meet their own needs.



2. 국가와 지방의 지속가능발전 현황

우리나라에서 지속가능발전은 국민의 정부에서 시민사회와 학계 의견을 받아들여 대통령직속으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설치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 정부는 2000년 사회적 논란이 컸던 동강댐 건설계획을 백지화하면서 개발과 보전을 둘러싼 갈등을 예방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실현시키고자 첫 단추를 채웠다.

참여정부는 지속가능발전을 국정과제의 하나로 받아들이면서 기본적인 시스템을 만드는 데 역점을 두었다. 국가 지속가능발전 비전 선언(2005), 국가 지속가능발전 전략 및 이행계획의 수립(2006), 지속가능발전 지표의 개발 및 평가 등 기본적인 골격을 갖추고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을 제정(2007)하여 이를 전국의 지자체로 확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명박정부에서는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저탄소 녹색성장을 발표하였으나 아이러니하게도 4대강 사업과 원전 확충 정책을 추진하면서 지속가능발전을 후퇴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세계적으로 환경과 경제의 통합에서 환경, 경제, 사회의 통합으로 담론이 발전해 가고 있음에도, 오히려 정책 통합 기조를 다시 환경, 경제로 환원시켰고 실제로는 환경조차 고려되지 않은 개발주의로 환원했기 때문이다. 물론 '녹색성장'을 부각시키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지속가능발전'을 축소하여 결국 양

립할 수 있는 두 정책의 조화와 확산 기회를 차단한 측면이 크다.

패러다임 전환에 노력했던 중앙정부와 달리 지방정부는 개발에 대한 향수가 매우 컸다. 민선 단체장이 주민들의 개발요구에 편승한 결과 수도권은 물론이고 지방도시까지 토건중심의 난개발이 확산되었다. 심지어 지속가능발전을 국정과제의 하나로 포함시켰던 참여정부도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명분으로 혁신도시, 기업도시 조성 등을 통해 지역개발에 초점을 맞추기는 마찬가지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환경시민사회단체와 지방의제21 추진기구를 중심으로 난개발과 경제성장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환경과 사회를 고려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져 왔다. 2002년에는 전국 지자체의 90%가 리우회의의 결의 사항인 '지방의제 21'을 작성하는 성과를 거두어 남아공에서 개최된 유엔정상회의 기간에 모범사례로 소개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행정의 마인드와 법제도적인 뒷받침이 부족하여 지방의제21이 행정계획으로 반영되어 집행되는 경우가 드물어 한계를 나타냈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고 지방의 지속가능발전을 확산, 정착시키기 위한 로드맵을 2007년 마련하였다. 당시 로드맵의 주요 내용을 보면, '분권과 자율에 기반을 둔 지방의 지속가능발전 실현'이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추진전략과 중점과제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이 로드맵은 정권의 교체로 실행되지도 못한 채 끝났다.
현재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과 행정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이 가시화되는 시점에서 지방의 지속가능발전 실태와 대안을 짚어볼 필요가 있다.

3.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과 지방지속가능발전

이명박정부에서 추진한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은 궁극적으로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가치 중심의 지속가능발전 정책과 산업정책 중심의 녹색성장 정책이 상호 보완하면서 우리나라의 지속가능발전과 녹색성장을 함께 이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차별화를 시도하는 오류를 범하였다.
특히,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제정(2010, 이하 녹색성장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발전 노력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여 많은 혼란을 가져왔다. 서울시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라 2008년 10월 '서울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 시안을 확정하고 입법예고를 마친 후 시의회의 심의를 거쳐 2009년 기본조례를 제정하였다. 충청남도는 2008년 8월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 제정방침을 확정

하고 제정 작업을 준비 중이었다. 또한 많은 지자체가 거버넌스를 통해 지방의 지속가능발전 제도화를 준비하는 시점에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의 존폐에 영향을 주는 녹색성장법안 논의로 인해 모든 시도가 중단되었다.
녹색성장법의 제정으로 서울시는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를 제대로 운용을 해보지도 못하고 2010년 11월 '서울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 폐지안'을 입법예고하여 2011년에 동 조례를 폐지하였다. 다른 지역도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지방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를 비롯한 지속가능발전조례 제정을 추진하였으나 법률적 근거를 녹색성장법으로 하여 설치 · 운영해야 하는 기형적인 구조에서 그 취지를 살리기 어려운 상황을 맞았다. 결국 지방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려는 다양한 노력은 녹색성장이라는 개발 패러다임에 갇혀 좌절되는 상황에 직면하였다.

또한 녹색성장법은 민간중심의 지방 지속가능발전 실천 활동도 위축시켰다. 1995년 부산을 시작으로 지방의 지속가능발전을 실천하기 위하여 '지방의제21'을 작성하는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현재 전국 지자체의 92%가 '지방의제21'을 채택하였거나 작성중이다. 지방의제21 추진기구의 경우 일부에서는 지방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민간부문에서 실천 활동을 강화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속가능발전법이 무력화되고 나아가 녹색성장법의 하위로 전락하면서 지방에서도 지속가능발전보다는 녹색성장에 대한 관심과 예산지원이 강화되었다. 결국 그동안 쌓아왔던 지속가능발전 시민실천 활동도 제약을 받게 되었다.
하지만 녹색성장법은 제정과정과 운용과정에서 많은 비판과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에 저탄소 기조를 도입하고 인식을 확산시켰고, 녹색생활을 비롯하여 환경의 가치를 전국으로 확장시켰던 성과가 있었다.

4. 지방의 지속가능발전 실태와 제약요인

우리나라는 개발행정을 거치면서 30여 년간의 압축 성장으로 경제개발에는 성과를 이루었으나, 도시와 농촌 지역의 지속가능성이 모두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와 농촌 지역이 모두 지속가능성의 위기를 겪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이명박정부를 거치는 15년 동안 크게 나아지고 있지 않다.
도시 지역은 농촌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환경 · 사회분야 지속가능성이 낮아졌다. 인구밀집, 생활

공간의 질 저하, 환경오염과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농촌지역은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환경이 양호한 편이지만 인구유출과 고령화로 정주체계가 붕괴되고, 농업경쟁력이 감소하여 경제 · 사회분야 지속가능성은 낮아졌다.

도시지역	경제분야	• GRDP(지역내총생산) 도시집중 심화: 수도권 비중이 47.4%('05)→47.8%('13) • 도시근로자 소득 증가: 가구 월평균소득 전년대비 5.9% 증가('05) → 6.9% 증가('11년 대비)
	사회분야	• 도시근로자 계층 간 소득격차 심화: 상 · 하위20% 소득격차 5.41배('05) → 8.1배('12) • 수도권 인구의 과밀 심화: 48.3%('05) → 49.4%('12)
	환경분야	• 7개 특 · 광역시는 평균 99.5%의 도시화율('11) • 서울의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25.2㎍/㎥로 미국 뉴욕의 두배('12)
농촌지역	경제분야	• 농가소득/도시소득의 격차 심화: 99.5%('94)→78.2%('05)→59.1%('11) • 농가당 부채 증가: 788만('94) → 1,989만원('02) → 2,926만원('12)
	사회분야	• 농촌의 노인비율이 35.6%로 전체인구 고령화율 11.8%보다 훨씬높음('12) • 의료기관 소재율이 89(도시) : 11(농촌)로 농촌 열악('11)
	환경분야	• 녹지, 수질 등의 자연환경은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 • 상수도 보급률 취약: 면 지역 58.8%(서울 100%, '11)

이렇게 지방의 지속가능발전 위기를 가져온 제약요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수립과 집행에서 경제 · 사회 · 환경정책의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다. 지자체 행정계획을 수립할 때나 예산배분, 그리고 조직 위상에서 개발 및 경제정책에 정책우선순위가 높아 예산의 비중도 높았다. 반면, 사회정책과 환경정책은 정책 우선순위와 예산이 낮았다. 예를 들자면, 민선3기 지자체장의 공약이행사항을 점검한 결과를 살펴보면, 9,404건의 공약사업 중 지역경제개발 분야가 3,104건(33.0%), 지역사회개발 분야 1,104건(11.7%) 등 지역개발 관련 사업이 44.7%를 차지하였다. 다행히도 민선5기 지자체의 경우 토건분야를 탈피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등 많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 통합성이 결여된 '제로섬(zero-sum)' 정책으로 정책효과를 반감시켰다. 경제, 사회, 문화, 환경 등 관련 정책들이 상호 영향이나 연계성을 고려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데 따른 문제점이다. 예를 들자면, 도로건설 정책과 생태축 보전정책을 하나로 묶어서 추진하지 않고, 화력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한 산업정책과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한 기후변화정책이 상충하는 경우도 있다. 과거 지역에서 대규모 산업단지 개발이 소득 증가의 효과는 있었으나 환경오염으로 인한

질병, 오염의 복원 등으로 사회 · 환경 비용 증가를 초래하여 그 효과가 반감된 경우도 좋은 예이다. 이렇게 경제, 사회, 환경정책을 통합적으로 추진하지 않고 분절된 제로섬 정책은 정책효과를 상쇄(trade-off)시키거나 또는 한정해서 예산의 낭비 등을 초래했다.

셋째,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법 · 제도적 기반이 미흡하다.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을 모범적으로 추진했던 일부 지자체도 자치단체장 교체로 단절되는 사례가 빈번하다. 따라서 지속가능발전 정책 기조가 외부의 정치 · 경제 여건변화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등 법 · 제도적 장치를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 물론 중앙정부차원에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의 복원 등 정비가 우선된다면 한결 수월하겠지만, 지금이라도 지방의 정책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하여 각 지자체도 여건에 맞게 필요한 조례를 선도적으로 정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인천시 부평구가 2011년 12월 '인천시 부평구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기초 지자체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좋은 모범사례다. 서울시 노원구도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규정을 담은 조례를 2010년 12월에 제정하여 운영 중이다.

넷째, 민 · 관 협력 및 민간의 실질적인 지방정책의 참여 기회가 부족하다. 2000년 주민발의제도가 도입된 이후 주민감사청구(2000), 주민소송(2006), 주민투표, 주민참여예산(2004), 주민소환(2007)제도가 도입되었지만 실질적인 지방정책에 참여하는 기회가 적었다. 하지만 2011년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지방재정법 제39조의 개정에 따라 의무규정으로 전환되면서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지방의제21의 활동을 살펴보면, 2012년 기준으로 전국 244개 지자체 중 92%가 지방의제21을 수립 · 추진하였고 많은 활동 잠재력을 보이고 있으나, 취약한 법 · 제도적 기반과 환경부문에 집중된 사업내용 등으로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 앞으로 지방의제21을 한국적인 상황에 맞게 도약시키는 노력과 함께 지자체도 실제 행정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5. 지방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추진전략

지방에는 농촌형, 어촌형, 도시형 등 다양한 형태가 존재하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동시다발로 지속가능발전을 추진하기 보다는 패러다임 전환과 토대구축, 선도적인 모델을 발굴하고 확산해나가는 전

략이 필요하다.

우선, 지방에 지속가능발전을 도입하기 위한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하다. 지자체가 기존의 토건중심의 개발 패러다임을 극복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에 맞는 지속가능발전 비전과 전략 수립을 통해 각 부문정책의 유기적 연계를 강화시켜야 한다. 이때 지역사회 구성원의 합의를 통해 경제, 사회, 환경 부문의 조화를 이루는 미래 지향적 지역발전의 기본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비전과 전략수립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기조를 전환하기 위한 수단이다. 즉, 단기간, 외형적 경제 효과 중심의 개발 정책을 지양하고, 지역의 다양성과 지속가능성을 고려하는 정책기반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특히,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정책결정과정에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지방의 사회 · 문화 자산과 환경 자원을 적극 발굴 · 육성하여 새로운 일자리 창출 기반으로 활용하도록 한다.

둘째, 지방에서 지속가능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법 ·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는 전략이다. 중앙정부는 2010년 개정된 지속가능발전법을 기본법으로 복원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의해 왜곡되었던 지속가능발전과 녹색성장의 위상을 바로잡아야 한다. 이를 통해 지자체의 지속가능발전 추진근거를 확고히 할 필요가 있다. 지방정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를 제정하고 공무원의 인식을 전환시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지방행정 혁신을 지원한다.

셋째, 지속가능발전 선도 지자체 육성과 지원을 통한 성과의 단계적 확산전략이다. 우리나라가 대부분의 지역에서 지방의제21 활동을 하고 있어 세계적인 모범사례로 알려져 있지만 내용적인 발전을 이룰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전국에서 동시에 지속가능발전을 제도화하고 추진하는 대신에 우선 일부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속가능성에 대한 진단 및 컨설팅을 통해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대로 한국형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모델을 개발하고 추진체계를 구축하여 확산하는 단계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6. 지방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핵심과제

앞서 살펴본 추진전략에 따라서 어떤 과제를 실행할 것인지 살펴보자. 지자체별로 공통적으로 추진

할 수 있는 것은 우선 지자체별 지속가능발전 '비전'을 확립하고,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실천역량'을 강화하며 '평가체계'를 운영하는 4대 분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과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비전 확립 분야는 지자체별 지속가능발전 비전 선언과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다. 우선 미래지향적 지역발전의 기본 철학과 방향을 담은 지자체별 '지속가능발전비전' 선언을 통해 패러다임 전환의 계기를 마련한다. 중요한 것은 지역사회의 합의를 토대로 지역발전 계획과 정책목표의 우선순위를 명시해야 한다. UN 등에서 제시한 지속가능발전전략(또는 이행계획)을 토대로, 지방의제21을 비롯해서 기존의 지역발전계획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성하도록 한다. 아울러, 거버넌스를 통해서 지역의 실천력을 담보하기 위한 민 · 관의 협약 체결도 좋은 방안이다.
다음으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또는 이행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단체장이 비전을 선언하고 나서 이를 지방행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지방의 전문가, 시민사회, 산업계 등이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것이 중요하다. 기본전략이 수립되면 이를 토대로 향후 지자체의 정책 및 계획을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통합, 조율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추진체계 구축분야는 지속가능발전조례 제정과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등 추진기구 설치다. 지방정부가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여 지방행정계획 및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를 기본조례로 마련하도록 한다. 또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추진기구의 위상, 역할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지속가능발전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컨트롤타워로써 (가칭)지방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구성하고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미 지속가능발전법이 제 · 개정(2007, 2010)되어서 지방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기 때문이다.
인천시 부평구(2011)를 비롯하여 서울시 노원구(2010) 등이 조례를 마련하였고, 2013년 5월 서울특별시가 조례제정을 마무리하였다. 서울시 도봉구는 지속가능발전 관련 전담조직을 두고 업무를 추진 중에 있다.
현재 경기도청과 서울의 일부 구청 등 많은 지자체가 환경 부서를 중심으로 지속가능발전 업무를 추진하고 있지만, 앞으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지방행정의 혁신을 위하여 기획조정실 등이 업무를 총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자체 내 다양한 경제 · 사회 · 환경부서장과 정책조율을 비롯하여 민관 거버넌스 증진으로 정책통합을 추진하고 정책의 수용력을 높여야 하기 때문이다.

셋째, 실천역량 강화를 위해 선도 지자체를 지원하고, 교육을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 중앙정부는 지속가능발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거나 의지가 있는 지자체를 '지속가능발전 시범지자체'로 집중 지원할 필요가 있다. 지자체의 여건이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방식을 발굴해야 한다.
그리고 지속가능발전 교육의 내실화를 위하여 인식 및 역량진단을 지원하고,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속가능발전 교육을 강화하며 청소년 · 주민 · 기업 대상으로 확장한다. 아울러, 교육의 추진에서 NGO의 역할을 확대하여 민주, 인권, 평화, 통일, 환경 등 다양한 시민교육 경험들을 종합하여 사회통합교육으로 확대 발전시켜야 한다.

넷째, 평가체계 운영을 위하여 지방에 적합한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하고 평가체계를 구축한다. 지방자치단체 성과평가 항목에 '지속가능성' 지표를 반영하도록 하고, 중앙정부에서도 안전행정부 등의 지방자치단체 평가 시 '지속가능성' 관련 지표를 포함하도록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지방지속가능발전 지표를 개발하도록 하고 주민참여에 의한 지표 운영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때 지속가능발전 평가결과 공개와 환류과정을 거치도록 한다.
지속가능성 평가과정에 시민의 참여와 역할을 확대함으로써 시민의 관심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이를 정책전환에 활용하도록 한다. 중요한 것은 완벽한 지표 개발과 평가가 아니라 당시 구성원의 합의일 것이다.

비전확립	• 지방 지속가능발전 비전 선언 • 지방 지속가능발전 기본 전략 수립
추진체계구축	•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 제정 및 지속위 설치 •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지방행정 혁신
실천역량강화	• 선도 지자체 육성 • 지속가능발전 교육 내실화
평가체계운영	• 지방 지속가능발전 지표개발 및 평가체계 구축

〈지방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핵심과제〉

7. 지방의 지속가능발전 추진을 통한 기대효과

지속가능발전을 지방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4년의 민선 지자체장으로서 수년에서 십수 년이 지나서야 변화와 성과로 나타나는 지속가능발전 분야는 더욱 어려운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세대를 배려하는 지역발전으로 어느 정도 가시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첫째, 지역 거버넌스 구축으로 지역의 난개발을 예방하여 합리적 지역발전 모델로 확산시킬 수 있다. 지역개발 계획의 수립단계에서부터 실질적인 주민 참여가 가능하며, 변화된 시스템을 개별 지역개발 사업에 적용하여 난개발을 예방할 수 있다.
아울러, 거버넌스 기구인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각종 행정계획을 사전에 검토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지역개발을 유도할 수 있다.

둘째, 각기 추진되던 경제성장 · 사회통합 · 환경보전 전략이 통합 · 조정되고, 적정개발 수준에 대한 주민합의로 갈등 예방적 균형발전이 가능하다. 지역에서 각기 추진되던 경제정책(개발중심), 사회정책(재분배중심), 환경정책(보전중심) 간 정책이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으로 조화되어, 정책 간 상생효과를 얻는 구조로 전환시킬 수 있다.

셋째, 지자체 차원에서 지속가능발전 전략수립과 실천기반을 갖추게 되어 지역단위의 지속가능성 확보가 가능하다. 단기적 · 가시적 성과를 기대하는 주민과 이에 편승하는 자치단체장의 사고를 전환시켜 미래지향적 지속가능발전의 토대를 구축할 수 있다. 지방분권의 성과를 바탕으로 통합적 관점에서 주민참여를 통한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비전과 계획을 수립 · 추진한다.

넷째, 지역주민의 참여를 통한 거버넌스 활성화로 생명력 있고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를 정착시킬 수 있다. 민 · 관 · 산 등이 참여하는 지역 거버넌스의 발전으로 자발적 참여, 책임과 권한 공유, 상호간 협력할 수 있는 주민자치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다.

8. 마치며

세계는 지금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분명한 것은 지방의 지속가능발전이 실현되어야 국가, 나아가 지구촌의 지속가능성이 담보된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도 지속가능발전의 가치를 중심으로 지방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지역의 난개발을 예방하고 합리적 지역발전 모델을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 단기적이고 보여주기식 성과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던 토건 중심의 지역개발을 지양하고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하는 시점이다.

이를 위하여 중앙정부는 지속가능발전법을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으로 복원하여 제도를 갖추고, 대통령소속의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부활시켜 소통과 공론을 통해 경제, 사회, 환경정책의 조화를 이루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그동안 지역개발에 몰입하였던 지방정부는 지속가능발전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하여 비전 선언과 기본전략 수립이 필요하며, 조례를 제정하여 거버넌스 기구인 지방지속가능발전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추진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지방자치단체의 실천역량을 높이고, 지표개별과 평가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러한 노력과 실천을 통해 거버넌스를 활성화하고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를 확산시켜 나가야 한다. 지방의 지속가능발전이 모여 국가의 지속가능발전이 완성되기 때문이다. *

참고문헌

고재경, 전문가 100인의 진단 : Rio+20과 한국의 지속가능발전 과제, 2012

권기태, 지속가능발전과 국가발전전략(지속가능발전교육 강사양성과정 자료집), 2008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 시도공무원을 위한 지방지속가능발전 업무매뉴얼, 2008

김병완 · 오수길 등, 지방지속가능발전 진단과 컨설팅 실시방안 연구, 2007

김은경, 성장에서 지속가능발전으로, 2012

인천시 부평구, 미래부평 지속가능발전 전략 수립 연구, 2011

지속가능발전위원회(대통령소속), 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 및 이행계획, 2006

지속가능발전위원회(대통령소속), 지방 지속가능발전로드맵 수립 및 실행방안, 2007

지속가능발전위원회(대통령소속), 지속가능발전의 확산, 2008

지속가능발전위원회(환경부소속), 제2차 국가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2011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 ·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및 민관협력 활성화 방향 모색 토론회 자료집, 2013

building hope together

더 많은 꿈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당신의 희망을 나눠주세요.

희망제작소는

지역과 현장 중심의 연구를 통해 살아있는 대안을 만듭니다.
농촌과 지방을 살기 좋은 마을로 가꿔나갑니다.
소기업과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며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세웁니다.
공공리더와 시니어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우리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시민의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사회혁신의 원동력으로 삼습니다.
1만명 시민의 힘으로 움직이는 시민참여형 연구소입니다.

희망제작소의 후원회원이 되어주세요.

후원회원이 되시면,

다양한 분야에서 자원 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희망제작소의 각종 강연, 세미나에 초청합니다.
희망제작소 발간도서 구입 및 교육, 강연 수강 시, 할인혜택을 받습니다.
후원회원을 위한 특별한 회원모임과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희망제작소의 연간 사업 활동을 정리한 애뉴얼리포트를 매년 보내드립니다.



후원하기

후원회원 가입 문의 : 02-2031-2130 / give@makehope.org
후원계좌 : 하나은행 271-910002-36004 (예금주-희망제작소)

희망제작소
The Hope Institute

110-012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창동 290-11 비전빌딩 2~4층 | 전화번호 02-3210-0909 | 팩스 02-3210-0126